

동작구의회공고 제2019-52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11월 8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·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일자리정책과 추진)제정으로 인한 “출자 및 투자유치 지원” 조항에 따라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례에 “출자”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조성 방법 추가(안 제3조제1항제3호)

나. 기금의 사용 용도 추가(안 제5조제1항제5호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[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47-2)]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(전화 : 820-1323, FAX 820-1474, E-mail : jurakim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

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4조제5항에 따른 출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</u>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5. 6. (생략)</p> <p>② ③ (생략)</p>	<p>제4조(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) ① ----- 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「<u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</u>」 제4조제5항에 따른 출자</p> <p>6. 7.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)</p> <p>② ③ (현행과 같음)</p>